

공 보

제609호 2017. 9. 6.(수)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16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109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거창군 고시 제2017-11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8

공 고

거창군 거창읍 공고 제2017-58호 공시송달공고 9
 거창군 공고 제2017-961호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거창군 공고 제2017-965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공시송달공고 25
 거창군 공고 제2017-966호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공시송달공고 26
 거창군 공고 제2017-977호 공시송달공고 27
 거창군 공고 제2017-97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 - 164, 3-165호선) 사업 실시
 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8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17년 9월 6일

거창군 훈령 제416호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원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제5조제2항 관련)

부서별	합계	가직군 단순노무원			나직군 기능종사직				다직군 숙련종사직	청원 경찰
		소계	행정 보조원	현장 근로원	소계	검침원	발간실	도로 보수원	농기계수리	
총계	73 72	37	33	4	17	3	2	12	3	16 15
기획감사실	2				2		2			
행정과	11	8	5	3						3
재무과	1	1	1							
복지정책과	2	2	2							
경제교통과	2	2	2							
문화관광과	4	1	1							3
산림과	2 1	1	1							1 0
환경과	1	1	1							
건설과	13	1	1		12			12		
의회사무과	2	2	2							
농업 기술센터	8	5	5						3	
보건소	5	4	4							1
평생교육센터	6	5	5							1
수도 사업소	7				3	3				4
체육시설 사업소	2	1	1							1
거창사건 사업소	3	1	1							2
거창읍	1	1		1						
면	1	1	1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 운영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숙박동 운영에 따른 시설물 방호 필요
- 방문객 상시 내방 및 이용에 따른 상황 발생 대비에 위한 청원경찰 근무인원 필요

2. 주요내용

- 청원경찰 정수 조정(안 별표)

정 원	현 행	개 정	증	비고
총 정 원	15	16	1	
산 립 과	0	1	1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근무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0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235 외 6건(부여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35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371-128	2009-07-02	2017-09-06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 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8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156-7	2009-04-01	2017-09-06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7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31-24	2009-04-01	2017-09-06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여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산103-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235	2009-04-01	2017-09-06	거열산성 및 계전 골짜기 동쪽에 자리 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36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전길 102-1	2009-04-01	2017-09-06	모전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530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옥길 113	2009-04-01	2017-09-06	수옥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15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44-13	2009-04-01	2017-09-06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위: 천 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 (㎡)		사업비 (천 원)	사업 예정기간	사 업 시 행 자	
	지 적	개간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149-4번지	98,952	당초: 4,427㎡ 변경: 4,318㎡	당초: 48,620천원 변경: 39,820천원	2016. 1. 22. ~ 2017. 12. 31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구수길 203-4	김 은 주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7년 9월 4일

거 창 군 수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거 창 읍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7. 9. 5. ~ 2017. 9.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명	주 소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곽*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6길 47 아쇼카빌 ***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 6길 47 아쇼카빌 앞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생활폐기물 투기)	과태료 금206,000원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사항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오니, 2017.9.20까지 거창읍사무소 개발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60개월) 체납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읍사무소 개발과 환경담당(☎055-940-7321, fax055-940-7299)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및 대가지급 사실 안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

- 사업주는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부과 조항 삭제(안 제4조제4항, 제5항)

-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안 제11조)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완화

-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및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용 완화(안 제4조제1항, 제3항)
- 대가지급 등에 관한 수급자의 지급사실 통지 및 게시 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군수에게 대가지급 사실 안내 통지 의무 부과토록 개정(안 제5조)
-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 규정으로 완화(안 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2017. 8. 31. ~ 2017. 9. 20.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재무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219], 전화[940-3242] 또는 E-mail[jhkim0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 소: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표준계약을 체결”을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금지불약정서(별지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으로 하며, 같은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목“(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를 “(대가지급 사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삭제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하수급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역서”를 “계약서”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소		재무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재무과장 신 영 수
	팀 장 직위·성명	경리담당 신 순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종 훈 (☎940-3242)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삭제></p>	<p>법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 삭제</p>
<p>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p> <p>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p> <p>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 -----.</p> <p>② -----계약서----- ----- ----- ----- -----.</p>	<p>제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수정</p> <p>제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수정</p>
<p>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준수</p> <p>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업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평가결과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고려 삭제</p>
<p>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p> <p>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p> <p>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p>	<p>특수조건 반영 규정 완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임금지불약정서(제4호 관련)</p> <p>우리 업체에서는 ()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거창군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서약서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p> <p>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삭제</p>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14.1.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

- 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외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5.24.>
-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재무과장 신영수 (☎ 940-3210)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제목 :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경과안내 및 검사 명령서,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9. 04. ~ 2017. 09. 1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055-940-329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8월 31일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등 반송분 명단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 공고기간 : 2017. 09. 04. ~ 2017. 09. 1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055-940-3293)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증가산금 매월 1.2%)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31일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반송분 명단

공 시 송 달 공 고

구(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4.

거 창 군 수

- 공고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2017. 9. 4. ~ 9. 19. (15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이름	서*교	생년월일	61. 11. 09.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5길 19-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4. 부동산의 표시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46-1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46-2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46-3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46-4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46-5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8,300,000원				
6. 법적근거	구(舊).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7. 기타(문의처)	제출 처	기관명	거창군청	부서명	민원봉사실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연락처	055-940-3313	FAX	055-940-3288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64, 3-165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165호선)의 사업(변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04.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구분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12.31
		3				165	165	6.0	1,275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12.31
		3				165	165	6.0	1,266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cloverc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164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424	1,728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2	"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	514-4	대	55	55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4	"	514-3	도	56	5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5	"	512-6	대	56	56		거 창 군			
6	"	511-1	도	131	131		"			
7	"	512-5	대	16	16		"			
8	"	511-2	대	74	74		"			
9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471	표 재 성			당초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211	유 현 순			변경
10	"	205-1	대	24	24		거 창 군			
11	"	211-1	도	72	61		"			
12	"	210-1	대	27	27		거 창 군			
13	"	209-1	대	71	71		거 창 군			
14	"	213-1	도	27	21		거 창 군			
15	"	213-2	대	24	24	거창읍 동변리 213	박 성 근			당초
	"	213-2	대	24	24		거 창 군			변경
16	"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파종중			
17	"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파종중			
18	"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파종중			
19	"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계 영상공파종중			
20	"	227-2	대	250	235		거 창 군			
21	"	227-1	도	126	86		"			
22	"	226-2	도	34	23		"			
23	"	226-3	전	171	171		"			

○ 소로 3-165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9,734	1,275					당초
합계				29,734	1,266					변경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	187-3	도	30	19		거 창 군			
4	"	241-3	창	33	33		거 창 군			
5	"	188-1	도	29	29		거 창 군			
6	"	240-2	답	34	34		거 창 군			
7	"	188-2	답	18	18		거 창 군			
8	"	240-1	도	10	10		"			
9	"	239-1	대	12	12		거 창 군			
10	"	189-3	답	20	20		거 창 군			
11	"	190-2	답	1	1		"			
12	"	190-1	도	69	19		"			
13	"	191-1	도	37	19		"			
14	"	235-2	대	28	28		"			
15	"	235-1	도	5	5		"			
16	"	234-6	전	25	25		"			
17	"	234-4	도	6	6		"			
18	"	192-2	대	30	30		"			
19	"	234-5	전	89	89		"			
20	"	192-1	도	10	10		"			
21	"	234-3	도	5	5		"			
22	"	233-1	도	3	3		"			
23	"	233-2	대	16	16		"			
24	"	193-6	대	6	6		"			
25	"	193-4	도	7	7		"			
26	"	193-5	대	54	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영길			당초
	"	193-5	대	54	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영길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7	“	231-4	대	19	19		거 창 군			
28	“	193-3	도	68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 영 길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 창 군			
30	“	194-2	대	46	46		“			
31	“	194-1	도	19	19		“			
32	“	195-3	대	61	61		“			
33	“	195-2	도	20	20		“			
34	“	227-2	대	250	15		“			
35	“	227-1	도	126	23		“			
36	“	226-2	도	34	5		“			
37	“	226-3	전	171	31		“			